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항만재개발및주변지역발전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의무화 등 비효율적인 제안 절차를 개선하고, 해석이 모호한 규정이나 인용 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 제고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생략 등 추진 절차 효율화(안 제11조)

- 1) 항만관리·운영 주체이자 부지소유자인 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 시에는 제3자 공모생략이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(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)
- 2) 지자체가 경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제안하는 경우에도 3자 공모 생략토록 문구를 명확화(항만재개발법 분법(‘20.7)시 시행령 문구가 변경되어(선정한 경우→선정하도록 하는 경우) 생략 가능 여부 논란)
- 3) 더불어, 사업제안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대상을 보완(최초 제안자 제안서 상 시행자)하고, 재량 행위로 변경

나. 타 법령 인용 조문 수정(안 제 39조)

국가 등에 비 귀속되는 항만시설 범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(항만법 시행령) 인용 조항을 명확히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제1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인”을 “지방자치단체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(이하 “항만공사”라 한다)인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”를 “지방자치단체 또는 항만공사만 참여하는 경우(항만공사는 사업구역 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항만공사가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선정하도록”을 “선정하였거나 선정하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중 “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”를 “제안자의 제안서상 사업시행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9조 중 “제24조제1항”을 “제2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) ① ~ ⑤ (생략)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 및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	제11조(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. ----- ----- -----.
1.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	1. ----- 지방자치단체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(이하 “항만공사”라 한다)인 ----- 지방자치단체 또는 항만공사만 참여하는 경우(<u>항만공사의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항만공사가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</u>)
2.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	2. -----

우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<u>선정하도록</u> 정한 경우	----- ----- ----- ----- <u>선</u> <u>정하였거나 선정하도록</u> ---- -----
⑦ ~ ⑨ (생략)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<u>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</u>해야 한다.	⑦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제안자의 제안서상 사업시행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.</u>
⑪ · ⑫ (생략) 제39조(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) 법 제3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항만법」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<u>제24조제1항</u>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.	⑪ · ⑫ (현행과 같음) 제39조(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4조제4항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86